

행정사 합동사무소(분사무소) 설치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		
대표 행정사	성 명	생년월일			
	주 소				
대표 행정사	성 명	* 대표 행정사가 2명 이상인 경우	생년월일		
	주 소				
	성 명	* 대표 행정사가 2명 이상인 경우	생년월일		
	주 소				
합동 사무소	명 칭				
	주 소	전화번호			
합동 사무소 구성원	성 명	생년월일	행정사 종류	자격증 번호	실무교육 (기관 및 기간)
			(외국어:)		
분사무소	명 칭	책임 행정사	주 소		
	명 칭	책임 행정사	주 소		
	명 칭	책임 행정사	주 소		

「행정사법」 제10조제1항,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사진(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, 가로 3cm, 세로 4cm) 각 1장 2.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3.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행정사 자격증 2.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실무교육 수료증	

행정사정보시스템 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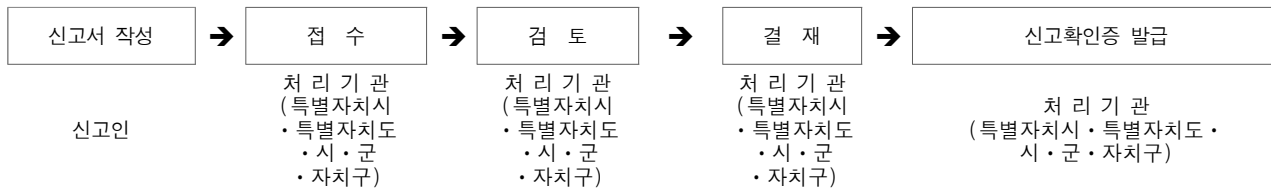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 및 실무교육 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담당 공무원의 행정사정보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